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614 발의연월일: 2025. 4. 7.

발 의 자:양부남·박균택·민형배

조인철 · 정준호 · 권향엽

이용우 • 이광희 • 허성무

염태영 · 김현정 · 장종태

복기왕 · 채현일 · 한준호

이학영 · 김승원 · 서미화

조계원 의원(19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주화운동 중 4·19혁명 참가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으나, 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아닌 5·18민주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음.

그러나 5·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고려할 때, 5·18민주화운동 참가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으로써 그 공헌과 희생 에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3의2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
- 13의3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- 13의4.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 자
-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로 등록된 사람으로본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	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	
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	
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	
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	
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	
1. ~ 13. (생 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<u>13</u> 의2.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:
	<u>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</u>
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	제1호에 따른 5・18민주화운
	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
<u>&lt;신 설&gt;</u>	<u>13</u> 의3.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:
	<u>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</u>
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	제2호에 따른 5・18민주화운
	<u>동부상자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13의4. 5·18민주화운동공로자:</u>
	<u>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</u>
	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
	<u>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·18</u>
	민주화운동희생자

14. ~ 18. (생 략)	14. ~ 1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
	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
	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
	<u>하여는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</u>
	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
	<u> 따른다.</u>
<u>⑥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